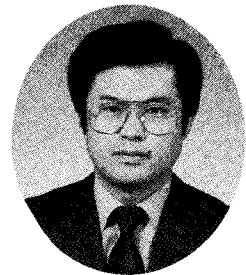


환경관리

# 실무상담

(세번째)



차승환

〈원주환경지침지도과장〉

## 13. 소득세법상 공해방지 시설투자 에 대한 감가상각

### 가. 법적근거

소득세법 시행령(87.5.8. 개정) 제 92조 제 8항 제 2호에 의하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해방지시설 투자업체에게 공해방지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시설 투자업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적용을 받게 되면 기업경영에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 대상시설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투자의 대상 범위는 재

구 분	적 용 범 위
1. 탈유황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가스, 먼지, 매연, 악취 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폐수 처리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3. 소음·진동 방지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 또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5. 폐유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 처리시설

무부령으로 규정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 의하면, 그 수혜대상범위를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그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상기 공해방지시설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이미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 다. 신고방법, 구비서류 및 신고기관

공해방지시설 투자 사업주는 그 투자에 대한 특별감각상각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경지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 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92조 제 8항)

이때 공해방지시설투자 확인을 받기 위하여 기업주는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 2부에 공해방지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배출시설 허가기관(환경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발급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조세감면 규제법과의 비교

조세감면 규제법 제18조 제 2항에 의하면 공해방지시설 투자업체에게 국산기자재의 경우 그 취득가액의 50/100, 외국산기자재의 경우 100분의 30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해방지시설 투자업체에서는 하나의 공해방지투자액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된 감가상각 전부를 혜택 받을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에 공해방지시설 투자사업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공제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총칙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 14. 폐수와 액상 산업폐기물의 구분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고농도의 폐수를 산업폐기물로 판단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체 폐수 처리시설에서 정화후 방류하여야 하는지

폐수와 산업폐기물의 구분 기준

	폐 수	산 업 폐 기 물	
구분기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로서 물이 함유된 액체상의 것.	특정유해산업폐기물 폐산 및 폐알카리	상온에서 고체상 또는 반고체상의 오염된 물질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이하인 것 또는 12.5이상인 것
		오 니 류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고체상 또는 반유체상의 오니류(무기성 오니포함)
		폐 유	발생공정에서 직접 물이 추가되지 않은 순수폐유 유수분리기에 의하여 1차분리된 후의 폐유
관리(처리)시 적용법령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적용범위	1.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물질의 구분에 한함. 2.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매립배출 및 해역배출 시는 적용 안됨		

에 대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하루에 특정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5m<sup>3</sup>이하 발생하는 배출업소의 폐수를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은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들과 기존 액상 산업폐기물 재생. 이용자나 처리업자와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시행과정에서 착오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다행히 환경청에서는(수관 31814-11509호, 87.12.1)산업폐수와 폐기물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 이용 신고자에 대하여도 87. 12. 31. 까지 환경청장의 폐수재이용 지정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으므로 일선에서 폐수 처리위탁시에는 환경청장의 폐수 재이용 지정서를 확인하고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 15. 중·소기업의 공해방지 시설자금

#### 융자시 신용보증 제도

정부에서는 기업체에서 환경오염방지 투자를 하는데 각종 기금을 '87년도에 1,705억원을 마련하고 장기처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종의 조건이 좋은 상당부분의 금액이 중·소기업체에 한하여 배정되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의 배출업소에서 이러한 기금을 융자 받고자할시 취급 은행으로부터 융자에 따른 담보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담보설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각지사와 협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해방지시설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 16. 폐수재이용시의 자가측정 회수

환경보전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기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

조 제 3 항 별표8에서 연료사용량이나 폐수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를 1종에서 5종까지 나누고, 자가측정항목과 측정회수를 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상태를 기업체 스스로 점검하여 방지시설의 운영·개선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기 위한 기업주의 책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선 배출업체에서는 공정중에 발생한 폐수를 정수과정을 거쳐 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폐수발생량과 폐수를 밖으로 보내는 배출량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이경우 자가측정회수를 어느 기준으로 시행하느냐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청에서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가 없다면 자가측정의 의미는 없다고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다.

#### [질의 요지]

1일 500m<sup>3</sup>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던 것을 정수처리후 공정수로 전량 재활용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가 전혀 없을 경우

- (1) 사업장의 종별은 몇종에 해당되는지?
- (2) 자가측정회수?
- (3) 자가측정 필요가 제외될 시 면제절차는?

#### [회신 요지]

(1)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가 없더라도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1일 500m<sup>3</sup>이상인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2)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가 전혀 없다면 법에서 부여한 자가측정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배출되는 폐수가 항상 외부로 방류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별도의절차없이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수관 01254- , '86.10.18.)

〈다음호에 계속〉